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171호, 2024. 1. 30. 공포, 2025. 7. 31. 시행)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한편,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12. ~ 4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(이하 “세부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 제3조(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평가) ①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·평가하여야 한	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<삭 제>

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

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09